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 시비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기 관 명 울산광역시, 남구

훈계대상자 ① 울산광역시 남구 ○○○○○○○○○과 지방○○○○ ○○○
(전 ○○○과)

② 울산광역시 남구 ○○○과 지방○○○○○ ○○○
(전 ○○○과)

내 용

지방○○○○○ ○○○은 2013. 1. 3.부터 2014. 8. 21.까지 지방○○○○ ○○○는 2013. 1. 14.부터 2015. 7. 9.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과에서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 시비보조금 집행 업무” 관련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울산광역시 남구 ○○○과(이하 “위 관서①”이라 한다)에서는 2013회계년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울산광역시로부터 상사업비(자치단체경상보조금) 90백만원을 교부받아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및 지방세 업무추진 보조사업을 2014. 4. 23.부터 2014. 12. 31.까지 수행하였다.

울산광역시 ○○○○관(이하 “위 관서②”이라 한다)에서는 중구 등 5개 구·군의 2013회계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적을 평가하여 최우수 1개, 우수 1개, 장려 3개 구·군에 상사업비(자치단

체경상보조금)를 [표1]과 같이 교부하고 이를 감독 및 정산 검사하였다.

[표1] 2013년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구·군	교부내역(천원)	보 조 목 적	비고
합 계	270,000	○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보조인력의 사역, 여비 등 경비 ○ 지방세 업무추진을 위한 장비 구입 및 기타 제경비 ○ 지방세업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중 구	40,000		
남 구	90,000		
동 구	40,000		
북 구	40,000		
울주군	60,000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1. 시비보조금 보조용도 외 집행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다.

2014. 4. 23. 위 관서①은 2013회계년도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14. 4. 30. 지방세 업무추진 지원(고급오락장 조사업무 피복비, 관내출장 여비) 및 공무원 사기진작(시 주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전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에 따른 인센티브제공용 연수복 지급)을 목적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시비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을 위 관서②에 제출하여 2014. 5. 12. 보조금 교부결정 승인받았다.

[표2] 2013년 시비보조금 보조사업 내용

세부사업	편성목 / 산출근거	예산액(천원)
계		90,000
지방세정 운영 (○○○과)	소 계	63,500
	· 세원조사(고급오락장 조사)업무 피복비	11,500
	· 전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에 따른 인센티브제공 연수복 지급	40,000
	· 관내출장 여비(20,000원 × 23명 × 11일)	5,000
	· 시 주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과 공통)	7,000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과)	소 계	26,500
	· 체납세 징수활동 피복비(460,000원 × 25명)	11,500
	· 관내출장 여비(20,000원 × 25명 × 10일)	5,000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할당 포상금	10,000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위 관서①에서는 당초 승인되거나 변경 승인된 보조사업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보조인력의 사역, 여비 등 경비와 지방세 업무추진을 위한 장비 구입 및 기타 제경비 및 지방세업무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관서①에서는 2014. 8. 1.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을 편성하면서 당초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되지 않은 행사운영비(전 직원 화합의 날 행사) 10,000천원을 예산 편성하여 2014. 12. 18. 보조용도 외로 집행¹⁾하였고, 2015. 3. 2. 아래 [표 3]과 같이 보조목적 외 집행을 정산서를 위 관서①에 제출하였다.

[표3] 2013년 시비보조금 남구 정산 내역

1) 경품(가정용세탁기 1개 1,200천원, TV 1개 1,400천원) 2,600천원과 테이블, 의자 등 임대료 2,800천원 및 비빔밥 800개 4,600천원 등

구 분		사업명	예산액 (원)	집행액 (원)	잔액 (원)	잔액발생 사 유
합 계			90,000,000	89,855,780	144,220	
남구	지방세징 운 영 (○○○과)	소 계	64,500,000	64,355,780	144,220	
		세 원 조 사 업 무 피 복 비	9,660,000	9,660,000	0	
		직 원 화 합 의 날 행 사	10,000,000	10,000,000	0	
		과 세 자 료 조 사 정 비	4,600,000	4,600,000	0	
		직원 해외선진벤치마킹 등	40,240,000	40,095,780	144,220	해외여행 집행잔액
	체 납 세 징수활동 강 화 (○○○과)	소 계	25,500,000	25,500,000		
		체 납 세 징 수 활 동 피 복 비	10,500,000	10,500,000		
		체 납 자 실 태 조 사 여 비	5,000,000	5,000,000		
		체 납 징 수 할 당 제 포 상 금	10,000,000	10,000,000		

※ 자료 : 울산광역시 제출자료

그런데 위 관서①은 목적과 다르게 보조금을 행사운영비로 집행한 이유에 대해 “세무부서 직원뿐만 아니라 남구청 전 공무원에게 체납액 징수 할당제를 실시하여 평소보다 더 많은 징수효과를 거두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당시 구청장의 강력한 지시가 있어 “직원 화합의 날 행사”에 10,000천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입부서의 특성상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①에서는 다른 보조사업인 전직원 한마음 연수가 취소 예정되어 전직원 체납세 징수할당에 따른 연수복 구입(연수복지급 비용 40,000천원)이 필요 없게 되자 2014. 8. 1. 사업목적을 직원 해외 선진 벤치마킹(비용 40,000천원)으로의 변경요청을 위 관서②에 제출하여 같은 날 변경 승인받은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세입부서의 특성상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그 결과 지방세 업무 추진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상 원조인 시비보조금 사업 목적을 훼손하였다.

2. 시비보조금 정산심사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및 제32조의8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②에서는 2015. 3. 2. 제출한 남구 정산서를 검토하면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 여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하여야 함에도 당초 사업계획 및 보조사업 내용이 변경 승인되지 않고 보조용도 외로 집행한 행사운영비(직원화합의 날 행사) 10,000천원을 그대로 정산처리 하였다.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집행하고,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장은

[주의]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보조금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